

『아시아영화연구』 편집규정

I. 목적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편집규정은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아시아영화연구』 발간에 있어 편집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편집위원회의 운영 규정, 논문의 청탁 및 공모, 응모, 투고, 심사, 기타 학술지 발간을 위한 각종 방법, 기준,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아시아영화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① 기획논문, 특별논문, 서평 등 학술지 전반에 대한 구성 및 기획
- ② 논문에 대한 심사자 선정 및 심사를 거친 논문에 관한 확인 및 처리
- ③ 기획논문 및 서평 등에 대한 필진 섭외 및 집필 의뢰
- ④ 기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2.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회의

1) 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의 목적과 부합하는 학술적 전문성을 갖춘 편집위원으로 그 인원은 8-12인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전임교수 이상 혹은 최근 3년간 학술논문의 활동이 우수한 전문가로 그 자격을 규정한다. 단, 외국 국적의 편집위원의 수는 국내 편집위원의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다.

2)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각 호당 2회 이상의 편집회의를 통해 학술지 구성 기획, 논문심사,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소집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 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된다.

6) 편집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대외비로 한다.

7)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신규 운영 규정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

3. 학회지의 발행

『아시아영화연구』는 연 3회(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4.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연구자는 영화연구소 JAMS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https://pnufi.jams.or.kr>)에 가입하여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영화연구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공지한 일시까지 투고된 논문에 한정하여 해당 호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Ⅲ. 논문 투고규정

1. 투고된 논문의 필자 자격은 영화 및 인접 학문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연구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영화학과 관련이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를 허용할 수 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의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2. 논문 저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 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 결과(KCI 문헌유사도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 저자는 투고 시에 심사료 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농협 948-01-159680 (예금주: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4. 원고의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A4 기본 편집 용지 기준 10장 이상 15장 이내로 한다. 단, 15장을 넘을 경우에는 1장당 추가 게재료가 부과된다. 서평은 A4 1장에서 2장 이내로 하며, 주제 서평의 경우 3장 이내까지 허용한다.
5. 원고는 아래아 한글 파일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외국어 논문은 MS 워드 파일도 허용한다. 원고의 서식은 A4 기본 편집 용지 기준으로 본문 글자 크기 10pt(각주 9pt), 들여쓰기 10pt(각주 내어쓰기 13pt), 행간 160%(각주 130%)로 한다.
6. 한국어 논문은 ‘제목-한국어 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외국어 초록-외국어 주제어’ 순으로 작성하며, 외국어 논문은 ‘제목-외국어 초록-외국어 주제어-본문-참고문헌-한국어 초록-한국어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모든 원고에는 A4 1매(1,000자) 내외의 한국어 및 영문 요약문과 5단어 내외의 한국어와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7. 투고 논문에는 저자의 이름과 소속 표기를 금지한다. 또한, ‘줄고’와 같은 표현을 쓰거나 해당 논문의 연구비 수혜 사실 등을 밝혀 필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최종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를 첫 번째로, 마지막에 교신저자를 기재하고 제1저자와 교신저자 사이에 공동저자를 기재한다. 저자 구분은 저자명 뒤에 *로 각주 표시한다.

9. 최종 수정된 논문의 제목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등재 이후 출판·편집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하다.
10. 논문 필자는 논문이 ‘게재가능’으로 판명된 후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하도록 한다.
11.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IV. 논문 작성 요령

논문 투고자는 논문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에 형식적 수정을 가할 수 있다.

1. 본문 작성 요령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양식은 심사 논문의 양식이 아니라 조판 양식으로 논문 배열의 순서와 작성 방법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본 학술지의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논문에 형식적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논문 제목

: 부 제목

저자명*

_____ | 국문초록 _____

|

국문초록 내용

주제어 : 5~10개

I. 단원

1. 장

* 직위(이메일)

1) 절

본문 내용. 각주 한글 양식1).

위의 책 및 앞의 책 표기2).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책인 경우에 이탤릭체로 표기3). 영화, 연극, 사진 등의 작품의 경우 < >로 표기4).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 경우5). 그 외의 논문 작성법은 통용되는 양식으로 작성.

| 참고문헌

단행본

홍길동, 김철수 역, 『영화와 문학』, 조선출판사, 2000.

Hong gildong, Cinema and Literature, MIT press, 2014.

논문

홍길동, 「영화의 창조력과 상상력」, 『조선영화연구』 제2집, 1895.

임격정, 「역사 영화에 대한 연구」, 영화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영화

<임격정>(홍찬욱, 2002).

인터넷 자료

<http://sillok.history.go.kr>(최종검색일 : 2014년 1월 1일)

1) 저자 이름,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쪽.

예시1 : 논문의 경우

홍길동, 「영화의 창조력과 상상력」, 『조선영화연구』 제2집, 1895, 32쪽.

임격정, 「역사 영화에 대한 연구」, 영화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24-32쪽.

예시2 : 단행본의 경우

홍길동, 김철수 역, 『영화와 문학』, 조선출판사, 2000, 10-12쪽.

2) 위의 책, 2쪽.

저자 이름, 앞의 책, 3쪽

3) Hong gildong, *Cinema and Literature*, MIT press, 2014, p. 20.

4) <임격정>(홍찬욱, 2002).

5) <http://sillok.history.go.kr>(최종검색일 : 2014년 1월 1일)

<Abstract>

Title
: Subtitle

Name

Contents of abstract.

Keywords : four to seven things.

■ 논문접수일자: 20 년 월 일
■ 논문심사일자: 20 년 월 일
■ 게재확정일자: 20 년 월 일

3) 본문 작성 요령

- ① 전체 분량: 논문 전체의 분량은 워드프로세서의 기본 양식을 기준으로 A4용지 10~20매 (도표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한 경우는 본 규정 제9조에서 정한 초과 게재비를 부담해야 한다.
- ② 논문 배열의 순서: 제목, 성명과 소속, 국문요약 및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요약문 및 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 ③ 제목: 제목에 부제를 달 경우에 양자 사이에 ‘콜론(:)’ 을 넣는다.
- ④ 필자 이름: 제목 아래 우측에 위치시키고 필자의 현직 및 소속과 영화 관련 경력을 *표각주로 병기할 수 있다.
- ⑤ 공동저자의 경우 표기: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주저자를 맨 앞에 명기한다.
- ⑥ 목차 간 서열 표현: 본문에 쓰이는 목차(항목) 간의 서열 표현은 다음의 용례에 따른다.
예) I. II. 1. 2. 1) 2) (1) (2)
- ⑦ 한자 및 외국어 표기: 한자는 한글을 쓰고 그 뒤의 ()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성격상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외국어 표기는 각 언어권에서 통용되는 표기법을 따르되, 외국어 고유명사는 처음 등장할 때만 한글과 원어를 병기하며, 이후에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 ⑧ 본문 표기 기호: 본문에서 사용되는 저서는 『 』, 논문은 「 」, 영화 및 영상, 사진, 연극, 작품 등의 경우는 < >, 직접인용은 “ ”, 강조 간접인용은 ‘ ’ 로 표기한다.

4) 각주 작성 요령

- ① 각주(footnote) 작성법에 따라 해당 쪽의 맨 아래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 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 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단, 서양인도 동양인과 마찬가지로 성(last name)과 명(first name)을 쓴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책인 경우에는 『 』를 붙이고, 영문과 기타 외국어 책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 로 표기한다.
 - 단행본일 경우: 저자명, 『저서 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 논문일 경우: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및 잡지 이름』, 통권 호수, 출판연도, 인용쪽수.
 - 잡지가 주간, 월간, 계간일 경우 계절, 연도순으로 표시.
 - 번역서일 경우: 저자명, 『저서 명』, 번역자,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쪽수.
 - 편집된 책의 논문 : 논문 저자, 「논문 제목」, 편자 이름, 『책 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 쪽수.
 - 신문의 경우: 신문제호, 0년 0월 0일, 면.
 - 영문 단행본일 경우: 저자 명, 저서 명, 출판사, 출판사 소재지, 출판연도, 인용 쪽수.
 - 영문 논문일 경우: 저자명, “논문명”, 저서 명, 출판사, 출판사 소재지, 출판연도, 인용 쪽수.
- ③ 인터넷 자료 표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사이트 명만 쓰지 않고 참고한 자료가 있는 사이트 전체 주소와 최종 검색일을 모두 표기한다.

예) <http://krf.or.kr/research/550551.html>

(최종 검색일 2008년 5월 10일)

5) 참고문헌 작성 요령

①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표기한다.

② 국내 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문헌과 영어 및 외국어 문헌 모두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각각 가나다 순서,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③ 참고문헌 표기법은 본 학술지의 투고 및 발간 규정 제7조 2)항 각주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6) 국문·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작성 요령

① 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본문과 다른 외국어(영문)로 작성한다. 외국어 초록은 영문으로 제한하되, 논문의 특성상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외국어 초록을 허용한다.

②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본지의 서식 기준)로 작성하고, 주제어의 경우 4-7개를 본문의 맨 뒤에 위치시킨다.

③ 참고문헌이 끝나는 부분과는 쪽을 달리해서 새로운 쪽에 독립시킨다.

V.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

1. 아시아영화 및 영화, 영상에 관련된 학술 연구 논문
2. 아시아영화 및 영화, 영상에 관련된 학술 연구 노트 및 기록: 단, 특별기고 논문과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획 초청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3. 특별 대담, 서평 등 아시아영화 및 영화, 영상에 관련된 학술적 활동의 기록 및 노트: 단, 일반 논문이 아닌 특별 대담, 서평 등 학술적 활동의 기록 및 노트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4. 연구자가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아시아영화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는 게재할 수 있다.

VI.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

1. 본 연구소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논문
2. 기존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단, 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의 국문 번역의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사전 공지하고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학술적 가치가 인정될 경우 게재할 수 있다.
3. 외국 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이전 연구지 『아시아영화연구』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받은 논문을 제목이나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VII.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 기준

1. 심사위원 자격: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추천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에 준한 업적 소지자여야 한다. 이때 심사자의 전문성과 해당 분야의 업적 여부(기본적으로 관련 논문 2편 이상)가 심사위원 추천의 기본 조건이 된다.
2.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 선정은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한다.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가 없을 경우는 외부의 유사 전공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4. 심사위원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심사 결과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VIII.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과 절차

1. 1차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 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2. 심사위원의 판정 :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단계로 판정한다.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게재가능 (총점 85점 이상. 단, 심사서에 제시된 6개 평가항목에서 4개 이상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나머지 항목에서 ‘부족’ 이하의 평가를 받지 않은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조건을 갖추고 있는 논문.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수정후 게재가 (총점 84-75점. 단, 심사서에 제시된 6개 평가항목에서 3개 이상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고 나머지 평가항목에서 ‘매우 부족’의 평가를 받지 않은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 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과 수정 사항서는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검토,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수정후 재심사 (총점 74-50점. 단, ‘게재가능’ 과 ‘수정후 게재가’ 에 해당하지 않는 논문으로 심사서에 제시된 6개 평가항목에서 ‘부족’ 이하가 3개 이하인 논문) : 내용과 형식에 있어 전체적으로 재고나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논문과 수정 사항서는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자의 검토, 확인 후 편집위원회의 검토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불가 (총점 50점 미만. 또한, 심사서에 제시된 6개 평가항목에서 4개 이상이 ‘부족’ 이하의 평가를 받은 논문 혹은 ‘매우 부족’ 이 2개 이상인 논문):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으로서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거나 본 연구소가 정한 투고할 수 없는 논문의 종류 규정에 부합한 논문일 경우.

3. 논문의 게재 여부의 판정 :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토대로 과반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자의 판정이 크게 엇갈리는 아래 3)항의 경우는 예외로 ‘재심사’ 를 거친다.

- 1)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능’ 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가능
- 2)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게재가’ 로 판정한 경우: 수정후 게재가
- 3) 심사위원 2인이 ‘수정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내렸을 지라도 심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 로 판정한 경우: 재심사
- 4)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사’ 로 판정한 경우: 수정후 재심사
- 5)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 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
- 6) 심사위원 판정에 따른 게재 여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칙에 따른다.

심사위원 판정				게재 여부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3				게재가능
2	1			게재가능
2		1		게재가능
1	1	1		수정후 게재가
1	2			수정후 게재가
	3			수정후 게재가
	2	1		수정후 게재가
1		1	1	수정후 재심사
1		2		수정후 재심사
	1	2		수정후 재심사
	1	1	1	수정후 재심사

		3		수정후 재심사
		2	1	수정후 재심사
1			2	계재불가
	1		2	계재불가
		1	2	계재불가
			3	계재불가
2			1	재심사
1	1		1	재심사
	2		1	재심사

7) 수정후 게재가의 처리:

‘게재가능’ 을 내린 심사위원을 제외한 1~3인의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을 발송하여, ‘수정 인정(85점)’, ‘수정 불인정(49점)’ 중 하나로 평가를 받은 후 심사 결과에 따른다. ‘수정 인정’ 은 ‘무수정 게재가’, ‘수정 불인정’ 은 ‘계재불가’ 와 동일한 판정으로 인정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과반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해도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편집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8) 수정후 재심사의 처리:

‘수정후 게재가’ 와 ‘수정후 재심사’ 로 판정한 1~3인의 심사위원에게 수정된 논문을 발송하여, ‘수정후 게재가’ 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위 7)항의 ‘수정 인정 여부’ 를, ‘수정후 재심사’ 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계재불가’ 의 4단계 심사를 다시 거쳐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최종판정이 ‘수정후 게재가’ 와 ‘게재가능’ 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타의 경우는 모두 ‘계재불가’ 로 처리한다.

9) 재심사의 처리:

새로운 1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재심사를 거친 논문의 판정은 새로운 1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기존 결과에서 ‘계재불가’ 를 제외한 판정과 합산하여 처리한다. 재심사 결과 ‘계재불가’ 를 제외한 판정이 나올 경우, 세칙에 의거하여 ‘무수정 게재가’ 나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내린다. 단, 2인의 심사자가 ‘무수정 게재가’, 1인의 심사자가 ‘계재불가’ 판정을 내린 논문의 재심사에서 새로운 1인의 심사결과가 다시 ‘계재불가’ 의 판정이 나올 경우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게재 유무를 결정하나 그 외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0) 수정논문에 대한 처리:

‘수정후 재심사’ 와 ‘수정후 게재가’ 판정받은 논문은 논문 수정 기간을 거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되지 않은 논문은 ‘계재불가’ 로 처리한다.

11) 수정논문과 최종논문에 대한 투고자의 투고 포기에 대한 논문의 처리:

논문 투고자가 1차 심사 이후 2차, 3차 논문 및 최종 논문 투고를 포기하여 투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계재불가’ 로 처리한다. 만약 투고자가 같은 논문

을 수정하여 다음 회의 논문집에 투고를 원할 경우 시, 재투고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서에 제시된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하되, 심사내용은 200자 이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1차 심사 결과 통보 이후, 게재 철회를 불가한다.
7. 투고자의 반론 제기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 1) 투고자는 최종 심사 결과 및 심사자의 심사 의견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반문서는 특정한 양식을 취하지 않는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심사상의 절차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검토 결과 심사자 선정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결정한다.
 - 4) 반론 제기에 의한 재심사는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IX. 심사서 작성 요령

1.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다음의 6개 항목을 평가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심사항목	평가 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학회지 성격과의 적합도	20점	17점	13점	8점	0점
연구내용의 독창성	20점	17점	13점	8점	0점
논리전개의 구조와 형식	20점	17점	13점	8점	0점
문헌연구 및 자료인용의 적절성	20점	17점	13점	8점	0점
예상되는 학문적 기여도	10점	8점	6점	4점	0점
논문초록의 적절성(한글, 영문)	10점	8점	6점	4점	0점

X. 편집위원의 투고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본인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VI. 투고 논문에 대

한 심사 기준과 절차에서 정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자신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결과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XI. 논문 게재료

1.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 논문은 게재가 거부된다.
2. 비전임의 경우 5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하며 전임의 경우 15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3. 투고 논문이 연구비 수혜 경우, 비전임과 전임을 구분하지 않고 교내 지원은 20만 원, 교외 지원은 30만 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4. 투고 논문의 본문 내용이 15장(A4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각 장당 1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XII. 저작권

1. 본 연구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pnufi.jams.or.kr>) 및 홈페이지(<https://pnufilm.pusan.ac.kr>)를 통한 원문 공개 등 기타 학술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본 연구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일차적으로 필자에게 있으며 XIII.1.항을 제외한 목적으로 논문을 사용할 경우, 저자의 동의를 구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된 규정은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된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된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된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개정된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논문 심사결과 보고서(배점선택형)

1. 심사의견항목 (배점선택형)

평가항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A	B	C	D	E
(1) 학회지 성격과의 적합도	20	17	13	8	0
(2) 연구내용의 독창성	20	17	13	8	0
(3) 논리전개의 구조와 형식	20	17	13	8	0
(4) 문헌연구 및 자료인용의 적절성	20	17	13	8	0
(5) 예상되는 학문적 기여도	10	8	6	4	0
(6) 논문초록의 적절성(한글, 영문)	10	8	6	4	0

2. 지적사항 및 심사내용(심사의견서 파일을 업로드 가능하고 저자공개 내용과 편집위원 공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가능)

3. 논문심사 종합평가 판정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총점 85점 이상	총점 84-75점	총점 74-50점	총점 50점 미만

수정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수정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1. 수정논문 심사결과 판정

수정된 논문을 인정하십니까?	인정	불인정

2. 지적사항 및 심사내용(심사의견서 파일을 업로드 가능하고 저자공개 내용과 편집위원 공개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가능)

3. 논문심사 종합평가 판정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총점 85점 이상	총점 84-75점	총점 74-50점	총점 50점 미만